

(사)한국육가공협회

SBS 수입쇠고기 운영요령 개정(안)

1. 목 적

- 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업계간 자율거래제도 (이하 SBS제도라 한다)를 (사)한국육가공협회 SBS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 회원사(END USER) 구매효과의 극대화(적기구매, 경제적구매, 안정적공급)
- 다) 수입우육 유통질서 유지

2. 용어의 정의

- 가) “SBS 제도”라 함은 슈퍼그룹 또는 최종수요자가 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와 직접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나) 쇠고기라 함은 HSK분류표상 0201,0202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된 것을 말한다.
- 다) 슈퍼그룹(SUPER-GROUP)이라 함은 SBS 제도하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관련 최종수요자(이하 회원사라 한다)에게 배분할 수 있는 최종 수요자들의 조직 또는 단체등으로서 본 요령에서는 (사)한국육가공협회를 말한다.
- 라) 최종수요자(END-USER)라 함은 슈퍼그룹 (이하 육가공협회라 한다)을 통하여 쇠고기

를 수입할 수 있는 회원사를 말한다.

- 마) 차액금(MARK-UP)이라 함은 SBS제도를 통하여 쇠고기를 수입한 자가 축산발전기금을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3. 적용범위

SBS 제도로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배정운용

- 가) 협회 배정량(SUB-SHARE)
매년 축산물유통사업단에서 배정된 양
- 나) 배정대상
 - (1) 협회 정회원
 - (2) 년도말 QUOTA배정 이후 신규로 가입한 회원은 당협회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 취득후부터 배정대상에 해당된다.
- 다) 배정방식 및 기준
 - (1) 연도별 회원사의 배정량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년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단, 정부의 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각 회원사에 배정한 QUOTA는 4분기로

나누어 소진함을 원칙으로 함

(3) 분기량을 소진 못한 회원사의 QUOTA는 협회가 분기마다 회수하여 다음 분기에 QUOTA를 더 필요로 하는 회원사에 전배한다.

(4) 협회는 신규가입회원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고 배정받은 QUOTA를 최대한 소진하기 위하여 일정량을 협회에 유보하고 다음과 같이 조정운영한다.

㉞ 분기량을 전량 소진하고서 배정된 연간 QUOTA량 내에서 조기 소진할 회원사는 협회에 조기 QUOTA 사용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함

㉟ QUOTA를 배정받고 년중 사용할 QUOTA가 부족한 회원사는 년중 추가소요량을 년초에 또는 사용할 분기전에 신청하면 (4)항 협회 유보량과 (3)항 회원사의 회수량으로 추가 배정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가배정 QUOTA가 있을 경우는 협회에 유보했다가 위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반적인 QUOTA 부족현상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추가 QUOTA배정 요청해서 배정할 수 있다.

㊱ 기본 QUOTA 배정후 신규로 가입한 회원사는 ㉞항에 준하여 년중 또는 분기별 소요량을 신청하면 협회가 조정 배정한다.

(5) 회원사는 배정받은 QUOTA를 검역(정밀검역), 통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말까지 통관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㉞ 공급자가 선적을 연기하였을 경우

㉟ 회원사가 통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협회에서 제시한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㊱ 공급자의 선적서류의 제시기일 지연 또는 서류 및 물품의 이상으로 검역, 통관이 지연되었을 경우

㊲ 기타 공급자 또는 회원사의 잘못으로 통관이 지연되었을 경우

㊳ 잔류물질 등의 검역문제로 정밀검역중인 경우
라) 용도제한

(1) 햄, 소시지 이와 유사한 가공품의 원료등과 포장육 또는 부분육용

(2) 기타 권장, 제한조치사항

㉞ 수입한 상태의 지육으로 판매할 수 없음.

㉟ 육가공제품(부분육 포함)에는 원산지표시등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㊱ 부분육(Cut Meat)을 단순절단, 성형 포장시에 상품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수입시 개별포장을 한 것 중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 표시사항은 ㉞항과 같다.

마) 임가공시의 협회보고

(1) SBS 쇠고기를 가공시에는 자체가공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가공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와 협의하여 부정유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입 및 인도

가) 계약체결

(1) 개별구매

회원사(END-USER)와 수출국 공급자가 개별구매 계약체결하며 협회는 회원사의 요청시 국외에 직접구매 희망품목에 대한 가격 및 동향파악을 대신할 수 있다.

(2) 공동구매

회원사 위입사 또는 소량품목의 경제적 구매를 위하여 구매위탁시는 협회 책임하에 공동구매 계약체결할 수 있다.

- (3) 회원사는 수입계약시 박스등 포장지(부분육:BOX, 지육:마대)에 협회가 지정한 계약번호를 다음과 같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KMIA	99	SL	011	01
협회약칭	연도	품목	회원사고유번호	수입신청차수

나) 수입신청

- (1) 회원사는 수입신청서와 구매계약사항(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포장방법, 선적시기, PACKER등) 및 협회의 SBS 운영요령을 준수한다는 별첨 1호 각서를 협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회원사는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협회에 수입신청하여야 하며 협회는 회원사의 수입신청을 취합, 검토하여 LPMO에 수입추천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추천을 신청한다.

다) 구매발주(수입신청, 수입추천)

협회는 회원사가 전주 토요일까지 협회에 수입신청한 건에 대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에 수입추천을 의뢰한다(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처리). 단, 긴급추천을 요할시 협회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라) 물품대 및 수입 제비용 납부

- (1) 제비용 납부사항: <표 1> 참조

- (2) 상기 물품대(수입액의 75%)와 MARK-UP(납입예정액)을 납입한다는 채무계약 이행에 필요한 견질용 어음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지 2호의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과 발행인의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법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3) 견질용 백지어음을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물품대(수입액의 75%)와 MARK-UP금액(납입예정액)을 합한 금액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기한은 계약된 물품대도 확약서(FIRM OFFER)상의 최종 선적

<표 1> 제비용 납부사항

납부시기	납부금액	납부사항
수입신청시	특별회비(수입신청량 KG×10원)	현금(은행보수)
L/C 개설시	L/C 개설비 C&F AMOUNT×1% 협회사수수료 C&F AMOUNT×0.8% 물품대(25%) C&F AMOUNT×25%	현금(은행보수) - 물품대 75% 및 축산발전기금 견질용 백지어음 별도제출 - 물품대 25%는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B/L 결제시	물품대(75%) C&F AMOUNT×75% 축산발전기금 (C&F AMOUNT+보험료+관세)×해당율	현금(은행보수)
통관시	- 관세 및 관세비용 - 창고료 및 보관료 - 기타제비용:발생예정액 전액	현금(은행보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 (4) 회원사는 협회로부터 물품대의 결제금액이 통지된 날로부터 1개월(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위의 1개월이내에 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 1개월을 넘길 때마다 L/C개설 은행에서 계산한 대지급이자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80일을 넘기지 못한다. 위의 대지급이자 및 기일내에 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회에서 공매처분할 수 있다.

마) 차액금(MARK-UP)납부

- (1) 회원사는 고시된 MARK-UP을 B/L(물품대) 결제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협에서 L/C개설시에는 각서를 제출하고 물품대(B/L인수) 납부전에 수입금액(CIF+관세)에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에 의한 MARK-UP을 공급한 금액을 선적서류(물품대) 결제 이전에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환율은 MARK-UP 납입당일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 보험료는 $C\&F \text{ AMOUNT} \times 110\% \times 0.531\%$ 로 산출하고 관세는 $CIF \times \text{관세율}$ 로 산출한다.

- (2) 회원사가 타은행에서 L/C개설시 협회는 MARK-UP 납입에 대한 별지3호의 은행각서를 징구한다.

바) 대금정산

협회는 통관 완료후 10일 이내 제비용을 정산한다.

사) 물품인수도

- (1) SBS용 수입쇠고기는 협회 책임하에 수입 및

통관한다.

- (2) 협회는 통관완료후 회원사의 출고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협회지정 보관창고(보세창고)에서 회원사 지정창고 문전상차도로 회원사에게 인도한다. 단 클레임, 미정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회가 출고를 보류할 수 있다.
- (3) 회원사는 클레임 발생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를 지연, 거절할 수 없다.
- (4) 인수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회원사가 부담한다.
- (5) 협회공동구매 물량은 협회책임하에 인수도한 후 지정창고에 수송 보관후 해당 회원사에게 공급한다.

아) 클레임 처리

- (1) 처리당사자- 실수요자와 공급자
- (2) 구상대상- 중량부족, 품목 및 품질상이 등 계약내용과 위반된 사항에 따라 구상처리한다.
- (3) 협회는 위의 클레임이 발생하여 회원사가 요구할 시 실사 또는 검정사에 의뢰해서 해결을 도울 수 있다.

6. 샘플수입

가) 회원사는 분기별 배정물량 중에서 필요한 샘플을 수입할 수 있다.

나) 샘플은 3박스(박스당 30kg)/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MARK-UP 적용을 받지 않는다.

7. 사후관리

협회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사후관리하며 회원사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가) 협회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전회원사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임의 선정하여 실시한다.

나) 회원사는 별도의 작업일지를 비치해야 하고 입고량,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을 기재해야 한다.

다) 사후관리 점검시는 다음사항을 점검한다.

- (1) 용도의 제조가공 및 판매행위 금지
- (2) 재고량 파악 및 보관상태 점검
- (3) 작업일지 (2년간 보존)
- (4) 수입쇠고기 유통질서를 위한 지도감독
- (5) 기타 본 운영요령이 규정한 사항

8. 협회 수수료 부과

가) 협회는 본지침에서 규정한 업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액 (수수료등)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나) 협회수수료는 L/C 개설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신청일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9. 장부비치와 공개

협회는 본 지침 운용과 관련된 구매공급 및 정산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당사자에게 공개한다.

10. 제재

본 요령을 위반시에는 축산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1. 준용

농림부 제정 수입쇠고기 SBS 운영요령이 본 요령과 함께 준용된다.

부 칙

1. 본 운영요령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요령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SBS 운영요령에 의하되 본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본 운영요령 개정안은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심의후 확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올때는 양파나 식초를 이용

일찍 자려고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간혹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정신이 더욱 말뚱말뚱해지게 마련이다.

이런 때는 양파를 하나 가져다가 여러 토막으로 잘라서 머리맡에 놓아 두어 본다. 사람에게는 똑같은 소리나 냄새가 계속되면 잠이 온다고 한다. 보슬보슬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금방 졸음이 오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양파 냄새는 이런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신경이 피로해 있을 때리든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등 정신 상태가 항진되어 있어서 잠을 이루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초를 한 숟가락 마시면 신기하리만큼 잠이 잘 온다.

무름이 있는 사람은 환부에 하루에 몇 차례씩 식초를 바르면 얼마 가지 않아 낫게 된다. 곰팡이류는 원래 산에 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차멀미나 배멀미에도 식초가 좋은 약이 된다. 멀미가 날 때는 물에 식초를 타서 마셔 본다. 한결 기분이 좋아진다. 식초가 없을 때는 레몬을 한쪽 베어 먹어도 좋다.